

2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영유아담당관 : 최경화 ☎2133-5088 영유아지원팀장 : 이영경 ☎5105 담당 : 신민경 ☎5109

□ 총 1건 건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	
<p>조리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지침 개정 요청 (영유아담당관, '24.4.12.) → 보건복지부 건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추진배경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리 종사자의 고령화, 어린이집 조리원의 낮은 급여로 조리원 종사자 구인이 어려운 상황○ 현재 근무 중인 자 외 신규 채용 시에도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화하여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 필요□ 필요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존 근무 중인 조리원은 『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』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(60세)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모 없이 65세까지 보조금을 지원 중○ 신규 채용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 및 지원 절차 간소화 필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신규 채용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,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초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 60세 초과자를 지원 중□ 건의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 요청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38 1624 1436 1814"><thead><tr><th>개 정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시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</td></tr></tbody></table>□ 관련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	개 정	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시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
개 정			
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시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			